Deloitte.

Aug 2025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5년 개정 상법 주요내용 및 사외이사 고려사항

리더 메세지

김한석 센터장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5년 7월 22일부터 개정 상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합산 3%룰 강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 상법은 소수주주 보호와 이사회 기능 강화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가속화하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역할이 한층 더 강조되면서,
이사회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 카드뉴스에서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사외이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사회 운영 방향 수립에 유용한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 202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Deloitte.

2025 개정 상법

개정 상법 주요내용(*1)

7/3 국회 본회의 통과, 7/22 공포

1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2025.07.22. 공포 즉시 시행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추가**
- 이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함

2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2026.07.23.부터 시행

-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 **의무선임비율 상향 조정** (1/4 → **1/3**)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과반수(현행) 유지

3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룰' 강화

2026.07.23.부터 시행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

4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2027.1.1.부터 시행

- 상장회사는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 개최 가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 의무화**

(*1) 법무부,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2025.07.15.

© 202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Deloitte.

2025 개정 상법

1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2025.07.22. 공포 즉시 시행

논의배경(*1)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 간 이해충돌로 주주 간 **부(富)의 이전이 발생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 간 문제일 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 입은 주주에게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 존재

신·구법 비교

현행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하며, 주주에 대한 의무는 명시되지 않음

현행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신설>

개정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직무 수행 시,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함

개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1)

주주가치 향상

소수주주 이익 보호

기업 신뢰도 제고

기업 투명성 제고, 투자자 신뢰 회복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주 간 이해상충 해소를 통한 기업 저평가 문제 개선

(*1)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한국회계학회 공동세미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를 위한 2025 기업지배구조의 미래: 국내외 환경 변화와 효과적인 대응방향, 장정애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2025.05.09.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Deloitte.

2025 개정 상법

2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26.7.23. 부터 시행

논의배경(*1)

현행법은 상장회사 사외이사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조 및 업무집행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

신·구법 비교

현행

2000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사외이사 선임의무' 도입 이후,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를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정의

현행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

개정

독립이사를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하고, 상장회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독립이사 선임의무로 변경

독립이사 선임 비율 **상향 조정**(1/4 → **1/3**)

*일반 상장사의 선임비율을 1/3로 개정,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과반수(현행) 유지

개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_____ **3분의** _____ **독립이사**
(제382 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_____. _____ **독립이사는** _____ (후략)

*제 400조의 제2항, 제542조의4조 제3항, 제542조의8제2항 내지 제5항, 제542조의 11, 제635조 각 개정은 기재 생략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독립성 기반 위상 강화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견제와 감시

의사결정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거버넌스 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신력 있는 IMD* 및 ACGA** 등에 거버넌스 순위 개선 요인 제공

* 국제경영개발원, **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1) 법제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법률안 등 16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2025.07.15.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Deloitte.

2025 개정 상법

3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3%룰' 강화

'26.7.23. 부터 시행

논의배경(*1)

현행법상 최대주주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해임 시 특수관계인 등 의결권을 합산하여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는 합산하지 않고 개별 주주 기준으로 계산하여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존재

신·구법 비교

현행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현행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개정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함

* 최대주주가 아닌 기타 주주는 현행과 같이 개별 주주를 기준으로 3% 룰 적용

개정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④ _____ _____ _____ _____(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_____ _____ _____.

⑦ 〈후단 삭제〉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소수주주 권리 개선 기회 마련
-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 증대
- 대주주의 영향력 제한 가능성 증대

(*1) 법무부,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2025.07.15.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Deloitte.

2025 개정 상법

4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27.1.1. 부터 시행

논의배경(*1)

전 세계적으로 전자주주총회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여건 개선의 필요성 증가**

신·구법 비교

현행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상법 제368조의4)만 존재**

현행 제364조(소집지)

①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신설〉

현행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의결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상장회사의 경우, 병행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허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화**

*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 상장회사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후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예정

개정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개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_____ _____ _____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_____ .

신설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주주총회 참여 용이성 증대 및 회사 견제 기능 강화
- 접근성 향상, 대면총회 진행 대비 비용절감 요소 제공 (친환경적)
- 실시간 소통 확대를 통한 주주총회 실질화

(*1) 법무부,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 '상법' 국무회의 의결」, 2025.07.15.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Deloitte.

2025 개정 상법

개정 상법이 회계에 미치는 영향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소액주주와 해외소재주주의 주총 의결권 행사 증가 가능성
- 한 명의 주주가 여러 회사의 주총에 동시에 참여해 의결권 행사 가능
- 대주주의 주총 의결권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

1.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 감소

→ 대주주가 5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면서도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 중, 대주주의 지분율이 30% 초반 등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종속기업이 관계기업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음

2. 피투자주식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부채 변동

→ 종속기업주식이 관계기업주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주식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부채금액 증가 가능성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Deloitte.

2025 개정 상법

시사점

총주주의 이익 관점에서 의사결정 체계 정비

- 이사회 안건 심의 시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
- 특정 주주 차별, 분할·합병 등 민감 이슈에 대한 민사·형사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의사결정 과정 및 판단 근거에 대한 체계적 문서화
- 필요 시 법률·회계 등 외부전문가 의견 확보를 통해 책임 리스크에 대응
- 적극적인 IR 활동 등을 통한 소수주주와의 선제적·투명한 의사소통 절차 마련

감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실무 리스크 대응

-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으로 정족수 미달 및 감사위원 선임 차질 가능성 증대
- 감사위원 후보의 회계·재무 전문성 및 독립성 검토 강화
- 감사위원회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내부감사부서 자원·운영체계 정기 점검

독립이사 확대에 따른 이사회 구조 점검

- 이사회 내 경영진 견제 및 균형 구조 점검
- 후보군 관리, 자격검증, 평가·연임 연계 등 전략적·투명한 선임 및 추천 체계 구축
- BSM* 조기도입을 통한 이사회 구성 적정성의 선제적 점검 및 승계계획 연계 강화
- 독립이사 평가 결과를 보수·임기와 연계하는 체계 마련

*Board Skills Matrix: 이사회의 구성, 역량, 다양성 정보를 도식화해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 평가 프레임워크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운영 기반 정비

- IT 인프라, 사이버보안, 원격 인증 등 운영 기반 점검 및 기술 장애 대응체계 마련
- 전자주주총회 운영 프로세스(질의·투표관리, 데이터 보존 등) 정비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의 증가가 실질 지배력 및 연결 여부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소수주주·해외소재 주주 참여 증가로 지배구조 개편 거래(분할·합병 등)시 승인가능성 점검

이사회 사무국·감사위원회 지원조직(내부감사부서)의 기능 강화

- 이사회·감사위원회의 전략적 판단·감시 기능 실질화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 지원조직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산·인사권 등 구조적 보완
- 지원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이사회의 책임 경영 기반 강화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Deloitte.

2025 개정 상법

사외이사 고려사항 – 체크리스트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

- 안건 심의 시, 총주주의 이익 및 주주 간 형평성 고려 여부가 사전 검토되었는가? ☑
- 주요 자본거래(물적분할, 합병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 자문을 받았는가? ☑
- 판단 근거 및 결정 경위가 회의록 등으로 체계적으로 문서화되었는가? ☑
- 이사의 경영판단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사전검토·기록 등)와, 사후 법적 리스크에 대비한 보호장치(임원배상책임보험 등)가 마련되었는가? ☑

상장회사 독립이사 도입 및 선임비율 확대

- 선임기준, 자격검증 절차, 후보군 확보 전략 등이 정비되었는가? ☑
- 이사회 구성 및 협업 방식이 독립이사 중심으로 재검토되었는가? ☑
- 신규 독립이사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체계가 마련되었는가? ☑
- 독립이사 성과평가 결과가 보수·연임 여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가? ☑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룰' 강화

-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기준이 적용되었는가? ☑
- 정족수 미달 리스크에 대비해 의결권 확보 전략(전자투표 등)이 수립되었는가? ☑
- 감사위원 후보의 회계·재무 전문성과 독립성을 검증할 체계가 갖추어졌는가? ☑
- 감사위원회가 실질적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정보접근 권한 등이 확보되었는가? ☑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 전자주총 도입에 따른 주주 참여 구조 변화가 연결범위 판단이나 조직재편에 미치는 영향이 점검되었는가? ☑
- 전자주총 운영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었는가? ☑
- 원격 주주의 인증, 공시, 의결 결과 보존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
-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 및 복구 체계가 마련되었는가?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Deloitte.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전문가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I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현 파트너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학범 파트너
Strategy, Risk & Transactions
@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유민지 파트너
Audit & Assurance
@ minjyoo@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krccg@deloitte.com

© 202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Deloitte.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krccg@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김한석 Partner
hansukim@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025.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